

##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F-1-5 사증 발급 기준

구 분	주요내용	
입국 절차 등	○ 재외공관에서 <b>F-1-5(방문동거, 90일) 사증</b> 을 받아 입국한 후 체류기간 연장	
초청 자격 (한국측)	○ 한국인 배우자, 국적·영주자격 취득한 결혼이민자 ※ 단, 한부모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국적·영주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초청 가능	
초청 사유 (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지원 또는 인도적 사유)	<p>④ 원칙 : 자녀가 <b>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</b> 초청 가능</p> <p>⑥ 한부모 및 다자녀(3명) 가정 : 자녀가 <b>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말까지</b> 초청 가능</p> <p>☞ 예시 : 2022년 현재, 사증 신청일 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자녀가 2013년생(한부모·다자녀 가정은 2010년생)인 경우 2022년 9월까지만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음</li> <li>2. 자녀가 2014년생인 경우 시기에 관계없이 초청할 수 있음</li> <li>3. 자녀가 2012년생(한부모·다자녀 가정은 2009년생)인 경우 초청할 수 없음</li> </ol> <p>⑦ 인도적 사유 : <b>초청인 부부 또는 자녀에게 중증 질환·중증 장애</b>가 있는 경우</p>	
초청 인원 (체류 가능 인원)	<p>○ 결혼이민자의 <b>부모 : 2명</b></p> <p>○ 결혼이민자의 <b>부모 외 가족 : 1명</b></p> <p>※ 다른 가족을 초청했다면 부 또는 모 초청 불가, 부 또는 모를 초청했다면 다른 가족 초청 불가</p>	
초청 횟수 (첫째 자녀부터 우선 적용)	<p>④ 원칙 : <b>자녀 1명당 2회</b></p> <p>※ 부모 모두를 초청한 경우 2회 초청한 것으로 간주</p> <p>⑥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/⑦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: 횟수 제한 없음</p>	
피초청 자격 (베트남측)	원칙	○ 결혼이민자의 <b>부 또는 모</b> (동시 초청·체류 가능)
	예외	<p>○ 결혼이민자의 <b>만 19세 이상 형제자매, 전혼관계 출생 자녀</b> (미성년자 불가)</p> <p>☞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(단, 위의 '인도적 사유'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중대 질병(암, 거동 불편 등) 또는 장애,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2. 피초청인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</li> <li>3. 실질적인 양육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</li> </ol>
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증발급 제한	<p>○ "초청인(불법고용 등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)" 또는 "초청인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던 외국인(출국명령,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)"이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: ④/⑥는 5년간 초청 제한, ⑦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1년간 초청 자격 제한</p> <p>○ "피초청인(출국명령, 강제퇴거명령, 국내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경우)"이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사증 발급 계속 제한</p>	
국내 체류 기간의 상한	자녀 연령 등 기준	<p>④ 원칙 :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</p> <p>⑥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 :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</p> <p>⑦ 인도적 사유 :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</p>
	입국일 기준	○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
기타 유의사항	○ 일시 가사 지원, 결혼식 참석 등 목적은 C-3(단기방문, 90일) 사증 신청 대상임	

##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방문동거(F-1-5) 사증 신청 시 구비서류

### ㉠/㉡ 자녀 양육지원이 목적인 경우

구분	연번	구비서류	비고
기본 서류	1	○ 사증발급 신청서 ※ 여권 ※ 여권용 사진(3.5×4.5cm) 1장 ※ 수수료(미화 30달러)	
	2	○ 초청장	붙임1
한국 서류	3	○ 신원보증서(보증기간: 입국한 날부터 3년)	붙임2
	4	○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	붙임3
	5	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
	6	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<임신한 경우> 임신진단서 추가 <재혼·입양한 경우>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<한부모 가정의 경우>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,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 <친양자의 경우>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	
	7	○ 기본증명서(상세)	
	8	○ 주민등록표 등본 <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,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> 사유서 및 증빙자료 (예: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추가	
	9	○ 자녀의 재학증명서(초·중·고등학교만 해당) <del>※ 주된 양육지원 대상 자녀 1명 것만 제출해도 무방</del>	
	10	○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	
	11	○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(예: 외국인등록증 앞/뒤)	
	베트남 서류	12	○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(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)
13		○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(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)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	
14		○ 신분증 사본	
15		○ 결핵 진단서(지정 병원에서 발급)	
16		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호구부 등> ○ 호구부(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※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(이하 같음) ○ 출생증명서 ○ 미혼인 경우, 미혼임을 나타내는 서류 ○ 이혼판결문(이혼한 경우,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 포함)	
17		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진단서 등> ○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(국립·공립병원 또는 대학·종합병원의 진단서만 인정)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 ○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 및 소명자료 ※ 단, 이상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	
18		○ 격리 동의서	붙임4

- 【유의사항】**
- ① 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
  -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.
  - ③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.
  - ④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·날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
  - ⑤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.
  - ⑥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.

◎ 인도적 사정(중증질환·중증장애)이 있는 결혼이민 가정 지원이 목적인 경우

구분	연번	구비서류	비고
기본서류	1	○ 사증발급 신청서 ※ 여권 ※ 여권용 사진(3.5×4.5cm) 1장 ※ 수수료(미화 30달러)	
한국서류	2	○ 초청장	붙임1
	3	○ 신원보증서(보증기간: 입국한 날부터 3년)	붙임2
	4	○ 불법체류·취업 방지 서약서	붙임3
	5	○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
	6	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<임신한 경우> 임신진단서 추가 <재혼·입양한 경우> 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<한부모 가정의 경우> 자녀에 대한 친권·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조정조서, 협의서 또는 판결문 등 추가 <친양자의 경우>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	
	7	○ 기본증명서(상세)	
	8	○ 주민등록표 등본 <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, 또는 실제 동거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 다른 경우> 사유서 및 증빙자료 (예: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) 추가	
	9	○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(예: 주민등록증 앞/뒤)	
	10	○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(예: 외국인등록증 앞/뒤)	
	11	<중증질환인 경우> ○ 진료비 영수증 : 영수증 우측 상단에 '중증질환(중증난치질환)' 또는 '산정특례' 사실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	
	12	<중증장애인 경우> ○ 장애인증명서 : '중증장애' 또는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'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	
베트남서류	13	○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(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)	
	14	○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호구부(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):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	
	15	○ 신분증 사본	
	16	○ 결핵 진단서(지정 병원에서 발급)	
	17	<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, 자녀인 경우 - 호구부 등> ○ 호구부(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※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, 원본도 지참(이하 같음) ○ 출생증명서	
	18	○ 격리 동의서	붙임4

- 【유의사항】 ① 신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
 ②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.  
 ③ 사증 신청 시 반드시 위의 연번 순서대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.  
 ④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·날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.  
 ⑤ 사증 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더 요구할 수도 있음.  
 ⑥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한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.